

발행번호 2-230-2019-88912

수원지방검찰청

우편번호/16512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전화/(031)5182-3114 전송/031-5182-4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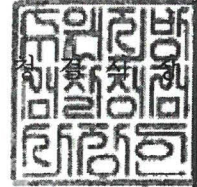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19. 4. 29.

수 신 군인권센터

발신 수원 지방 검찰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9형제1838호
② 고 소 (발) 인 성 명		군인권센터
피의자 [피고소(발인)]	③ 성 명	전성숙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죄 명		별지 참조
⑥ 처 분 검 사		박기태
⑦ 처 분 년 월 일		2019. 4. 26.
⑧ 처 분 요 지		별지 참조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문서확인번호 2155-6528-6507-4400

발행번호 2-230-2019-88912

[죄 명]

가.군형법위반

라.절도

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특수협박

사.폭행

아.모욕

[처분요지]

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마-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바-참고인증지

사,아-공소권없음



발행번호 2-230-2019-88912

수원지방검찰청

우편번호/16512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전화/(031)5182-3114 전송/031-5182-4555

불기소이유 및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19. 4. 29.

수신 군인권센터

발신 수원지방검찰청



제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번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9형제1838호
② 고소(발)인성명		군인권센터
피의자 [피고소(발)인]	③ 성명	박찬주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죄명		별지 참조
⑥ 처분검사		박기태
⑦ 처분년월일		2019. 4. 26.
⑧ 처분요지		별지 참조
⑨ 불기소이유		별지 참조
⑩ 비고		



문서확인번호 2155-6528-6597-4400

발행번호 2-230-2019-88912

[죄 명]

가.군형법위반

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다.업무상횡령

라.절도

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폭행

[처분요지]

가,나,다,라,마-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공소권없음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9. 4. 26.

사건번호 2019년 형제1838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박기태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1.가,라,마,바,사,아 전성숙

2.가,나,다,라,마,사 박찬주

II. 죄 명 가. 균형법위반

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예관한법률위반

다. 업무상횡령

라. 절도

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 특수협박

사. 폭행

아. 모욕

III. 주 문

1. 피의자 전성숙 균형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절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특수협박 참고인증지, 폭행,모욕 공소권없음



검찰-2019-230-11707-BDD00198546551



2019-04-29

1 / 22



2. 피의자 박찬주 균형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절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들의 공동범행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모과청 · 꽃감 만들기 지시행위

공모하여 2013. 가을경 ~ 2016. 가을경 제7기동군단장 및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서 각 부대 소속 공관병들인 피해자 한■■■ · 문■■■ · 성■■■ · 정■■■ · 원■■■ · 이■■■ · 최■■■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공관에 있던 모과나무에서 모과를 채취하여 모과청을,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감말랭이와 꽃감을 만들도록 함

(2) 피의자들의 자녀 시중들기 지시행위

공모하여 2013. 4.경 ~ 2017. 7. 중순경 제7기동군단장 및 육군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서 각 부대 소속 공관병들인 피해자 이■■■ · 손■■■ · 문■■■ · 박■■■ · 이■■■ · 정■■■ · 이■■■ · 성■■■ · 원■■■ · 남■■■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들의 가족 및 손님 방문시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게 하고, 피의자들의 아들과 그 친구들의 잠자리 준비 및 옷세탁을 하도록 함

(3) 피의자들의 자녀 차량이동 지시행위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 ~ 2017. 7. 중순경 제2작전사령관 소속 운전 부사관인 피해자 최■■■와 전속부관인 피해자 김■■■으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공군 제11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에서 군복무 중인 피의자들의 자녀 박○○(둘째 자녀), 민간인인



박○○(첫째 자녀)의 이동을 위해서 피의자 박찬주의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

(가) 피의자 박찬주

○ 인정되는 사실

- 피의자 박찬주는 2013. 4. 24.경 ~ 2014. 10. 16.경 육군 제7기동군단장(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2014. 10. 17.경 ~ 2015. 9. 15.경 육군본부 참모차장(충남 계룡시 소재), 2015. 9. 16.경 ~ 2017. 8. 8.경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을 각 역임하였다.
- 피해자 이■■■■은 2013. 4. 24.경 ~ 2014. 8. 31.경 제7기동군단장 전속부관¹⁾으로, 피해자 김■■■■ 2015. 9. 16.경 ~ 2017. 4.경 제2작전사령관 전속부관으로, 피해자 이■■■■은 2016. 3. 5.경 ~ 2017. 8. 8.경 제2작전사령관 공관 공관장으로, 피해자 최■■■■는 2015. 9. 16.경 ~ 2016. 3. 4.경 제2작전사령관 운전부사관 및 공관 공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 피해자 한■■■■은 2013. 6. 11.경 ~ 2014. 4. 16.경 육군 제7기동군단장 공관 조리병으로, 피해자 문■■■■는 2013. 6. 14.경 ~ 2014. 10. 16.경 위 제7기동군단장 공관 공관관리병으로, 피해자 성■■■■는 2015. 1.경 ~ 2016. 3. 8.경 육군본부 참모차장 및 제2작전사령관 공관 운전병으로, 피해자 정■■■■은 2015. 3. 29.경 ~ 2016. 10. 18.경 육군본부 참모차장 및 제2작전사령관 공관 조리병으로, 피해자 원■■■■은 2016. 1. 15.경 ~ 2017. 8. 8.경 제2작전사령관 공관 운전병으로, 피해자 손■■■■은 2013. 7.경 ~ 2014. 12. 4.경 제7기동군단장 및 육군본부 참모차장 운전병으로, 피해자 박■■■■는 2013. 4. 24.경 ~ 2014. 8.경 제7기동군단장 공관 조리병으로, 피해자 이■■■■은 2014. 7. 11.경 ~ 2015. 2. 6.경 제7기동군단장 및 육군본부 참모차장 공관 조리병으로, 피해자 이■■■■은 2014. 11.경 ~ 2015. 8.경 육군본부 참모차장 공관 공관관리병으로, 피해자 남■■■■는 2017. 4. 6.경

1) 적시된 근○○간은 피해자들의 실제 복○○간이 아니라, 피의자 박찬주가 피해자들의 직속상관으로 있는 기간을 기초로 하였음.



~ 2017. 8. 8.경 제2작전사령관 공관 조리병으로, 피해자 임[redacted]은 2016. 6.경 육군 제2작전사령관 공관 조리병으로 각 근무하였다.

○ 판단

- 위 피해자들에게 피의자 박찬주가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점은 별론으로 하고, 가사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자 박찬주의 본건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으로 귀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2도4531 판결 외 다수).
- 제7기동군단장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제7기동군단의 최고 지휘관으로 그 구성부대·예하부대·지원부대의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운영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육군본부 참모차장은 육군본부의 최고 지휘관인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하고, 참모총장 부재 시 그 역할을 대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제2작전사령관은 추방지역인 경상·전라·충청 등 6개 도와 5개의 광역시를 방어하는 제2작전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으로 그 구성부대·예하부대·지원부대의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운영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판단건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시들이 형식적, 외형적으로 볼 때 피의자 박찬주의



직무수행으로 인식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의자 박찬주의 위와 같은 지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위 박찬주의 직무수행과 거리가 멀고, 나아가 제7기동군단장·육군본부 참모차장·제2작전사령관의 일반적 권한 범위 내의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위와 같은 피의자 박찬주의 지시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피의자 전성숙

○ 판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 박찬주의 본건 지시행위가 그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이상 그와 일용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 전성숙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범죄인정되지 않아 범죄혐의없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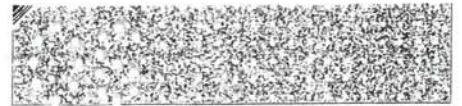
나. 준형법위반(가혹행위)

(1) 호출기 착용 관련 가혹행위

공모하여 2014. 4.경 ~ 2015. 8.경 제7기동군단장·육군참모차장 공관에서 각 부대 소속 공관병들이 피의자 박■■■■·이■■■■·정■■■■·이■■■■·김■■■■에게 호출용 손목시계를 24시간 채워 수시로 호출하였음

(2) 모친 모욕 관련 가혹행위

2) 한편, 피의자들의 본건 지시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법상 강요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본건 지시가 형법상 강요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공모하여 2015. 9.경 ~ 2017. 7.경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서 공관병들인 피해자 정■■■■·송■■■■·남■■■■에게 음식준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엄마가 너 휴가 나가면 이런 식으로 차려 주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각각 피해자들의 어머니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음

(3) 모과청 만들기 관련 가혹행위

공모하여 2016. 가을경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서 공관병들인 피해자 원■■■■·송■■■■에게 모과 100개를 칼로 썰어 모과청을 만들게 하였음

(4) 교회 출석 종용 관련 가혹행위

공모하여 2014. 11.경 ~ 2017. 7.경 육군본부 참모차장·제2작전사령관 공관에서 공관병들인 피해자 이■■■■·원■■■■·송■■■■·전■■■■·남■■■■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말에 교회에 나가도록 종용하였음

(5) 과도한 질책 관련 가혹행위

공모하여 2014. 2.경 ~ 2017. 7.경 제7기동군단장·육군본부 참모차장·제2작전사령관실 공관에서 피해자 박■■■■·이■■■■·김■■■■·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정신 나갔네, 미쳤네, 너 같은 것이 무슨 요리냐, 머리는 장식이나”라고 과도하게 질책하였음

(6) 과도한 노동 관련 가혹행위

공모하여 2014. 2.경 ~ 2017. 7.경 제7기동군단장·육군본부 참모차장·제2작전사령관실 공관에서 피해자 박■■■■·이■■■■·김■■■■·원■■■■·송■■■■·전■■■■으로 하여금 새벽 5시에 기상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피의자 박찬주의 새벽운동 준비, 식사준비, 공관 관리 등 과중한 노동을 시켰음

(가) 피의자 박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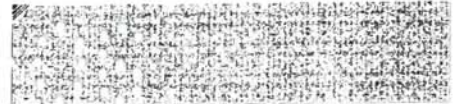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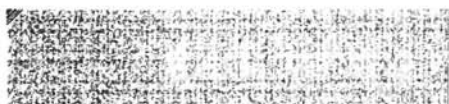




○ 판단

- 군형법 제62조³⁾ 상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 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경 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 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8도2222 판결 참조).
- 본건에서 피의자 박찬주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점은 별론으로 하 고, 가사 위 지시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현역군인이라는 신 분, 공관병 제도의 취지, 공관병 임무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 박찬주의 위 지시 가 다소 부당한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나, 군형법 상 '가혹행위'에 해 당한다고 볼 만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 렵다.
- 한편, 공관병이 2015. 1.경 자살 시도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관련(고발인의 고발장 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발여부가 불분명함) 군형법상 가혹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 여 판단건대, 문제된 공관병인 이 ■■■은 "15살 때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 은 적이 있다"고 취지로 진술(제3책 제3권 제947쪽 참조)하는 점, 고발인들에 의 해 적시된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서 일부 피해자들은 그러한 조치들이 생 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거나(가령, 호출벨의 경우 어떤 피해자들은 위 호출벨 사용이 더 편리했다고 진술함),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한 것(가령, 이 ■■■은 교회 에 가게된 것은 피의자 박찬주의 강요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라 고 진술함, 제3책 제3권 제942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이 ■■■의 자살시도가 피의자 박찬주의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3)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정하기 어렵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피의자 전성숙

○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 박찬주에 대하여 군형법위반(가혹행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군인신분자에게만 적용되는 군형법위반(가혹행위)의 죄책을 민간인인 피의자 전성숙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범죄인정되지 않아 범죄혐의없다4)[한편, (2)항의 경우 피의자 전성숙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나, 본건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고, 적법한 고소기간마저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범죄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함].

다. 절도

공모하여 2013. 가을경 ~ 2016. 가을경 제7기동군단장·제2작전사령관 공관에서 각 부대 소속 공관병들인 한■■■ 문■■■, 성■■■ 정■■■ 원■■■ 이■■■ 최■■■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그 부대 내에 식재된 모과나무에서 각 부대 소유의 모과를 따게 하였음

○ 피의자들 주장 및 판단

- 피의자들은 공관병들로 하여금 모과나무에서 모과를 따게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

- 4) 한편, 피의자들의 본건 지시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법상 강요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본건 지시가 형법상 강요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의 주장한다.

- 그런데 <군관사및전세금대부사업운영 훈령>에 의하면 공관은 국방 관련 최고 지휘부(지휘관)가 거주하는 '단독관사'로서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한남동 관사), 제1·3야전군사령관 및 제2작전사령관이 거주하는 관사를 의미하는바, 동 훈령에 의하면 공관사용은 민사상 무상임대차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바, 위 사용·수익권은 임차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인데, 본건 모과는 모두 제7기동군단장 및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 식재된 모과나무에 열린 열매로서, 위 모과나무는 공관의 이용을 위해 부합된 물건인바, 피의자들의 본건 공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공관의 부합물인 모과나무 및 그 모과나무의 천연과실인 모과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들이 위 모과나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어 위 모과를 채취하는 것을 두고 피의자들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⁵⁾.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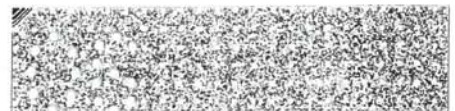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박찬주의 단독범행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골프공 줍기 지시

5) 위 모과나무를 공관 부합물이 아니라면 주물인 공관 이용을 위한 종물로 볼 수 있는데, 위 모과나무가 종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의 결론임





2013. 4.경 ~ 2017. 7. 중순경 제7기동군단장·육군참모차장·제2작전사령관 공관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면서 각 부대 소속 공관병들인 피해자 김■■■·문■■■·정■■■·박■■■·이■■■·성■■■·정■■■·송■■■·원■■■로 하여금 그 골프공을 줍도록 지시함

○ 판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런데 본건에서 피의자가 공관병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골프연습에 사용될 골프공을 줍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피의자가 직무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없다6).

(2) 회식 당시 회 주문, 후식배달 지시

2013. 4.경 ~ 2014. 10. 16.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상승레스토랑' 식당에서 육군 제7기동군단 소속 성명불상 장병으로 하여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횡감을 떼오게 한 뒤 그에게 그 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이후 위 식당 근무자에게 2차 장소인 BBQ

6) 한편,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법상 강요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본건 지시가 형법상 강요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치킨집이나 양식당으로 후식을 배달하도록 지시함

○ 피의자 주장

- 피의자는 '상승레스토랑'(제7군단의 복지회관의 일부임)에서 공식적인 행사와 회식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떼오라는 등의 직접 지시를 한 적은 전혀 없고, 그 대금은 부대 예산이나 사비로 결제하였으며, 후식 배달은 '상승레스토랑' 식당 근무 병사들이 스스로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부합증거

- '상승레스토랑' 복지시설 관리관인 황■■■■·원 은 피의자 박찬주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없고, 오히려 위 황■■■■은 자신이 위 수산시장에서 회를 구입하였다니 피의자 박찬주가 질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회를 구입하는 비용은 부대카드로 지불되었으며, 2차 장소에 치킨을 후식으로 가져다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제3책 3권 652쪽 이하, 4권 1703쪽 이하 참조)

○ 판단

- 고발인들은 위 '상승레스토랑'에서 근무한 병사인 '김■■■■'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고발하였고, 위 '김■■■■'은 피의자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주문하라고 지시하고 그 비용을 부하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들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2차 장소에 후식으로 치킨을 가져간 일은 있지만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제3책 4권 제1703쪽 이하).
- 본건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위 김■■■■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위 김■■■■의 진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유래된 전문진술이거나 자신의 추측에 기반한 것이므로 위 김■■■■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본건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나아가 가사, 본건과 같은 피의자의 지시가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위와 같은 지시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볼 때 직무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의자의 본건 지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없다.

(3) 정훈장교로 하여금 언론에 대한 제2작전사령부의 입장발표 지시

2017. 8. 2.경 제2작전사령부 소속 정훈참모인 전병규 대령으로 하여금 군인권센터의 2017 7. 31.자 언론 보도자료에 대응하여 '계속되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지시함

○ 피의자 주장

- 피의자는 위 전병규 대령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입장발표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위 발표내용은 군부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 입장발표를 정훈참모가 하는 것은 규정상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부합증거

- 위 전병규는 정훈참모로서 본건 관련한 사항은 피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2작전사령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대대변인의 업무 수행(제3책 제5권 중 제5권 제1966쪽, 업무분장 참조)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입장발표를 한 것)이고,
- 나아가, 피의자 박찬주의 전역지원신청서가 국방부장관의 반려로 인하여 그의 군인신분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언론사가 본건 관련 사항 취재과정에서 제2작전사령

7) 국방홍보훈령 제15조(보도절차)와 제16조(취재지원)의 규정에 의하면, 정훈참모는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입장발표 등 언론대응을 할 수 있음(제1책 제1권 제689쪽 이하)

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자 자신이 위와 같은 입장발표를 한 것이지 그것이 피의자 박찬주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제3책 제5권 제1957쪽 이하)하는 바 이는 피의자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없다.

(4) 공관병들의 GOP근무 지시

2015. 3.경 계룡대근무지원단장으로 하여금 육군 제12사단 주둔지인 최전방 GOP 경계근무에 공관병들을 1주일씩 파견 근무(피해자 정■■■ 2015. 3. 28. ~ 2015. 4. 3, 피해자 김■■■ 2015. 4. 3. ~ 2015. 4. 9, 피해자 이■■■ 2015. 4. 9. ~ 2015. 4. 15.)하도록 명령을 하게 함

○ 인정되는 사실 및 고발인의 주장

- 피의자 박찬주(당시 육군참모차장)가 소속된 육군본부는 구두로 공관병들인 위 정■■■ 김■■■·이■■■의 소속 부대인 계룡대근무지원단(국방부 직할부대)에게 위 공관병들의 전방GOP체험 관련 파견을 의뢰하였고, 위 계룡대근무지원단은 2015. 3. 26.경 및 2015. 4. 2.경 위 공관병들에 대하여 일주일간 파견명령을 내린 사실, 위 공관병들은 2015. 3. 28.부터 4. 15.까지 교대로 전방 12사단 GOP 파견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제3책 제2권 제406-4, 5쪽)
- 위 김■■■·이■■■은 자신들이 피의자 전성숙에 대해 충실하지 못하자, 피의자 박찬주가 공관병들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발인은 위 김■■■·이■■■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의자 박찬주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 정■■■ 등을 징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하였다.





○ 피의자 주장 및 판단

- 피의자 박찬주는 공관병들이 전방을 체험하는 견학 차원에서 그 절차에 따라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의해 피해자들을 파견근무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군인에 대한 인사관리 관련 규정인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의하면 <파견>의 경우 그 절차는 ① 파견요청 부대(기관)이 인력을 파견해주는 부대(기관)의 동의를 득함 → ② 파견요청 부대(기관)은 국방부에 파견요청 승인(인사통제 승인이라고 표현함)건의 → ③ 국방부의 파견승인 → ④ 파견해주는 부대(기관)은 파견인사명령으로 이루어지고, 파견요청은 위 훈령 제15조에 근거해야 한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절 파견 인력 운영

제13조(적용범위) 이 절은 대내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에 파견하는 모든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게 적용한다.

제14조(T/F-파견인력 운영 기본원칙) ② T/F-파견인력 운영소요 발생시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1년 범위 내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1년 이상 장기간 소요시는 정원 반영 후 보직으로 운영한다.

③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요청 이전에 인력파견에 대한 해당 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파견인력 요청기준)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령관)에게 파견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국방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 행정기관 요청시
2. 국내 외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연구 또는 업무지원이 필요한 때
3. 기획관리관실에서 승인한 한시조직 또는 한시편제 총원 요청시
4. 사무분장에 없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장·차관 승인시
5.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6. 외국군 주요인사 방문에 따른 통역 및 안내 지원 필요시

제16조(파견기간) ① 대내부대(기관)의 파견기간은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 연장이나 재파견이 불가피한 경우는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대외기관의 파견은 2년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기간에 한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파견 승인권자) T/F 편성 및 파견인력의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승인권자	비고
T/F 편성 (3명 이하)	부여 내 인력	본부 국 실장
	국방부 내 인력	사관
	각 군 파견 인력	각 군 대외기관 파견인력으로 영부
계별 파견 (3명 이하)	27개월 이내	인사복지실장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인사 및 총역업무 지원 등
	3~6개월 이내	사관
	6개월 초과	장관
특수기관 파견	승인권자 자필	장부 행정기관 등
파견 연장, 재파견	승인권자 자필	

제18조(파견 인력요청) ①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요청 이전에 일반적인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파견 승인권자에게 T/F·파견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파견 요청시는 승인된 T/F·파견인력 운영계획 사본과 각 군·관련부대(기관) 동의결과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T/F운영은 기획관리관, 파견인력은 인사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파견 요청시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견인력 운영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파견기간 동안의 업무 성과와 관찰사유를 명시하여 파견 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명령 발령) ① 인사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파견인력에 대하여 해당 군(기관)에 파견 인사통제를 승인 하달한다.

② 해당 군의 참모총장 및 기관의 장은 파견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선발하여 추천하고, 파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 그런데, 본 건의 경우 1) 파견요청이나 파견요청 동의가 형식상 공문이 아닌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 2) 파견요청의 경우 위 공관병들이 파견된 12사단이 아닌 육군본부(피의자 박찬주 소속)가 실시하였던 점, 3) 위 공관병들의 '전방체험'은 위 파견요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할 때, 피의자 박찬주가 공관병들이 소속 부대인 계룡대근무지원단에 파견의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⁸⁾.

- 따라서 피의자 박찬주가 공관병들의 소속부대인 계룡대근무지원단(국방부 직할부대)에게 위 공관병들의 12사단 GOP 파견을 의뢰하는 것은 외형상·형식상 육군을 지휘하는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육군참모차장의 권한행사 범위 내에 존재

8) ②, ③ 절차 준수와 관련하여 본건 파견 당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의하면 인사통제권을 보유한 계룡대근무지원단 소속 인력의 파견은 국방부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음(제1책 1권 789쪽 이하 참조)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가사, 피의자 박찬주의 위와 같은 파견의뢰가 외형상·형식상 그의 권한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① 위와 같은 GOP근○○간은 불과 1주일에 불과한 점, ②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관병들에게 전정의 위험, 전방의 군기태세 등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고 GOP 1주일 근무는 위와 같은 교육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당시 피의자의 전속부관인 김■■■은 공관병들이 위 GOP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진술하는 점(제3책 제5권 제1786쪽)으로 볼 때, 피의자의 위와 같은 지시가 개인적 목적·의도(자신의 처에 반항하는 공관병들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업무상횡령

(1) 공관에 개인 골프연습장 설치 관련 횡령

2015. 11. 27.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실 공관 내에 홀컵과 그린용 잔디를 설치하는 등의 골프연습장인 미니골프장을 준공하고서 그 공사비용 액수 미상의 금원을 부대 공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부대 예산을 횡령함

○ 피의자 주장

- 피의자는 공관에 그린용 잔디를 깔은 것은 사실이나, 부대 예산으로 결제하지 않았고, 설령 부대 예산으로 결제했다라도 그 공관도 부대시설이므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부합증거

- 피의자의 운전부사관이었던 최[REDACTED]는 공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린용 잔디를 바닥에 깔 것에 불과하며, 그 잔디는 무열대 체력단련장의 잔디 교체 시 남은 것이라고 진술하고(제3책 제5권 제2027쪽), 제2작전사령부 체력단련장의 사장인 윤춘관(민간인), 제2작전사령부 공병부 건설과장 최승환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는 바(제3책 3권 제989쪽 이하, 제999쪽 이하) 이는 피의자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 판단

- 무열대 골프장 즉 '무열대 체력단련장'은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4조, 제5조, 제12조에 의할 때 그 자산은 국가소유이며 육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무열대 골프장에 설치할 그린용 잔디 및 제2작전사령관 공관은 모두 국가(육군)의 예산으로 매입·관리되는 자산이므로 무열대 골프장에 설치하고 남은 그린용 잔디를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 설치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위 공관을 사용하는 피의자 박찬주가 이를 영득한다고 볼 수 없다.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4조(통제대상 체력단련장) 국방부에서 통제하는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육군의 자운대, 무열대, 선봉대, 항작사, 항공학교 및 남성대 체력단련장

제5조(운영) ① 군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3. 육해공군기지 체력단련장은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각 군에서 운영한다.

제12조(회계 및 이익금의 처리) ① 체력단련장의 예산집행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및 「군인복지기금법」 등 관련 법령이 따라 처리하며 지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을 따르되, 지출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없다.





(2) 터키 출장시 처 전성숙에 대한 경비 지원 관련 횡령

2015. 5. 25.경 ~ 2015. 5. 31.경 7일간 '제8차 한-터키 육군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로 해외 출장 시 동행한 처인 피의자 전성숙의 항공운임, 숙식비 등 여행경비 액수 미상의 금액을 공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함

○ 피의자 주장

- 피의자는 2015. 5. 25.부터 2015. 5. 31.까지 '제8차 한-터키 육군회의'에 참석당시 처와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항공료는 개인 부담하였고 숙식비 등은 업무협약에 따라 초청국인 터키 측에서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부합증거

- 초청국인 터키 측에서 피의자와 처 전성숙을 초청(제3책 제3권 제830쪽 이하)하였고,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2015. 5. 14.)에 따라 처 전성숙에 대한 항공료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숙식비·식비 등 체류비는 터키 측에서 부담한 사실이 확인(제3책 제3권 제795쪽 이하)되는 바 이는 피의자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9).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없다.

(3) 제7기동군단장 공관의 냉장고 횡령

2014. 10.경 육군 제7기동군단장 공관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발령받아 이사하면서 그

- 9) 한-터키 육군회의 시 양측 회의 책임자는 부부를 동반하는 전례가 있었고, 터키지상군사 참모장이 위 회의에서 피의자의 처를 동반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 제9조 제1항(위 훈령 제9조(고위공직자 등 출장) ① 국외출장시 수행하는 보좌관은 군지도급 인사는 2명, 그 밖의 고위공직자 직위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동부인은 의전적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에 근거하여 위 전성숙이 위 회의에 참여한 것임(제3책 제3권 제795-1쪽)



곳에 있던 냉장고 7대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함

○ 피의자 주장

- 피의자는 제7군단장 공관에 있는 냉장고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부합증거

- 공관청인 문■■■는 제7군단장 공관에 냉장고 7대가 있었는데, 그 중 3개는 피의자 개인소유였고, 피의자는 이사 당시 위 개인소유의 냉장고 3개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는 바, 이는 피의자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제3책 제3권 제1223쪽)

- 한편, 피의자는 제7군단장 공관에 비치한 개인 소유 냉장고 3대에 대한 매입내역(제3책 제4권 제1445쪽 이하)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피의자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곳에서 확인된 냉장고 3대(제3책 제3권 제789쪽 이하)는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였다고 말하는 위 매입내역과 일치하는 바, 이는 피의자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 아울러, 본건 이후 제7군단 예산과장 이정현이 제출한 공관 냉장고 현황(제3책 제3권 제837-1쪽 이하)을 보면 피의자가 군단장으로 재직 시 사용한 공관 보유의 냉장고 4대는 당시 모두 공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피의자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다.

다. 부정정락및금품등수수금지금지에 관한법률위반

공직자 등은 직부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배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 4. 24.경 ~ 2015. 9. 15.경 육군 제7기동군 단장 공관 및 육군 참모차장 공관에서 명절이나 피의자의 생일 등을 전후로 피의자의 지인이나 군부대 간부 및 그 가족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소고기, 과일박스 등 금품을 받음

○ 피의자가 명절에 과일 등 선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7군단장 재임시절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시행(16. 9. 28.) 이전의 것이고, 공관장인 이○○은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선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고(제3책 제2권 제196쪽), 달리 위 법률 시행 이후 피의자가 위 법에 저촉되는 규모의 선물을 수수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없다.

라. 폭행

2015.경 ~ 2016.경 육군 참모차장 및 육군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서 공관병인 피해자 이■■·원■■에게 폭력을 행사함

○ 부검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이■■·원■■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제3책 제5권 제1952쪽, 제2권 제259쪽).

○ 각 공소권없다.

3. 피의자 전성숙

가. 피해자 탁■■에 대한 도둑

2014. 4.경 ~ 5.경 피해자 탁■■에게 '너 같은 것이 요리사냐, 머리는 장식이나, 머리를 깎아 보채려주고 싶다'라고 말함



- 본건은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제1책 제1권, 아울러 고소기간 6개월 역시 도과됨)
- 공소권없다.

나. 피해자 원■■■■에 대한 폭행

2016. 3. 3.경 육군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서 공관병인 피해자 원■■■■에게 신발주머니를 던짐

-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제1책 2권 제235쪽) ■■■■
- 공소권없다.

다. 피의자 엄■■■■에 대한 폭수협박

2016. 6.경 육군 제2작전사령관 공관 주방에서 조리병인 피해자 엄■■■■의 조리 과정이 남에 들지 않는다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빼앗아 허공으로 휘두르고 도마에 광광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멍청하다, 바보다”라고 말하여 협박함

○ 피의자 주장

- 피의자는 칼로 도마를 수회 내리치며 혼을 낸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들고 허공에 휘두르거나 샅대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그 범행을 부인한다

○ 공관병 원■■■■·남■■■■의 각 진술

- 위 원■■■■ 등은 위 엄■■■■으로부터 피의자가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 그 부분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제1책 제1권 제110쪽, 제3책 제2권 제145쪽)한다.





○ 참고인증지의 필요성

- 피의자는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위 원■■■■, 남■■■■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피해 상황을 들었다는 전문진술로서, 위 전문진술만이 본건의 유일한 증거이다.
- 따라서 본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엄■■■■의 진술청취가 필수적인데, 위 엄■■■■은 2019. 2. 20.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다.

○ 위 엄■■■■의 소재발견시까지 참고인증지한다.

검사

(인)

